

# 2024년 폐기물부담금 신고 안내 요약

## 제도소개

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,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·재료·용기의 **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**

## 관련근거

『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12조(폐기물부담금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(제품·재료·용기의 출고·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)

## 대상품목(7종)

(일반제품)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, 부동액, 검, 1회용 기저귀, 담배,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 
(플라스틱 제품) 일반용/건축용

## 제출기간

(정기신고) **2024. 3. 31까지**

※ 폐기물부담금 분납 신청할 경우 정기신고(3월) 기한 내 제출 필수

## 제출실적

2023. 1. 1 ~ 2023. 12. 31(‘23년도 실적)

## 신고방법

1. 폐기물부담금 제도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
[www.budamgum.or.kr](http://www.budamgum.or.kr)  
(왼쪽 ‘폐기물부담금제도’ 클릭 이동)
2. 회원가입(사업자/사용자 가입, 공인인증서 등록)  
(기존 가입회원일 경우 생략)



3. ‘수입실적신고’ 메뉴 진입 후 해당년도(‘23년도) 신규작성 클릭, 실적 작성·제출
4. 예상 부담금액 확인

\*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서부 유튜브 채널 (검색명 : “폐기물부담금 수도권서부”)에서 동영상 시청

## 작성내용

단계별 작성 내용

(1단계)정보조회	(2단계)신고필증확인	(3단계)수량정보등록	(4단계)중량정보등록	(5단계)예상부담금
- 연간수입액 합계 - 법인 감면적용율	- 물품종류 - 순중량 적용여부	- 실제수입수량 (환산수량) - 비대상수량	- 신재원료사용량 - 재활용원료사용량 - 비대상물질량	(기본값면) - 연간 수입 플라스틱제품 3톤 - 연간 총 수입액 9만달러의 플라스틱 투입량 등 중 유리한 방식 자동적용

\* 작성된 자료는 모두 증빙자료 제출되어야 인정가능 ※순중량 적용 신고시 증빙자료 불필요

## 문의전화

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(수입업체 파트)

T. 02-3153-0540, 0542~0545

\* 정기신고 기간 중에는 특히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.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. / 점심시간 (12:00~13:00)